★ ◎ 본부장 방침 제352호

문서번호	설계품질혁신팀-2725
보존기간	10년
결재일자	2015.09.07
공개여부	비공개(7)
일상감사	대상

팀 원	설계품질혁신팀장	서비스혁신처장	건설사업본부장	
이인성	조진래	이우필	09/07 장달수	
협조	팀 원 손명보			

일상감사	No. 776	감사	의견
	2015/09/04	나용환	의견없음

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운영기준 개정 보고

서울특별시 SH공사

(건설사업본부 설계품질혁신팀)

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운영기준 개정 보고

국토교통부의『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』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(구 전면책임감리용역)평가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용역평가를 통한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코자 함.

Ⅰ 관련 근거

- 서울시 책임감리용역 중간평가 시행방안(2013.12.02.)
- 전면책임감리 용역평가 운영기준(2013.12.30)
-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505호(2015.07.10.)「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」

Ⅱ 주요 개정 내용

- 중간평가 결과의 용역능력평가점수 반영
  - 기존에는 중간평가 결과를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용역능력평가점수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나, 50%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.(해당 발주처에서 비율 조정 가능.)
- 용역 평가항목, 내용, 시기의 조정 여부
  - 기존의 "발주청은 해당용역의 규모, 기간, 특성 및 공사여건,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 등을 감안하여 세부평가항목이나 평가내용, 평가시기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"이라는 규정이 삭제되어 평가표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, 세부항목별 배점만 ±30%범위내에서 조정 가능.
- 기타사항
  - 주요 용어의 변경.(책임감리용역 → 건설사업관리용역 등)
  - 평가표 세부항목 일부 변경.(추가 또는 삭제)
  - 세부항목별 5단계 배점기준 변경.(단계별 배점 변별력 완화)
  - 평가점수 반올림 자리수 변경 등.

Ⅲ 검토 내용

용역능력평가 변경

- 용역능력평가의 반영비율

<table>
<tr><th colspan="5">현 행</th><th>검토 내용</th></tr>
<tr><td>구분</td><td>계</td><td>감리
업체</td><td>참여
감리원</td><td>시공
품질</td><td rowspan="6">- 국토부 지침의 평가기준이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중간평가 결과 50%이내, 준공평가점수 50%이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,
- 품질평가 점수를 용역능력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바,
- 품질평가 점수를 내부평가의 항목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 평가점수 반영 비율의 조정이 필요.</td></tr>
<tr><td>내부(중간)
평가</td><td>30%</td><td>-</td><td>30%</td><td>-</td></tr>
<tr><td>품질평가
(시공사)</td><td>30%</td><td>-</td><td>-</td><td>30%</td></tr>
<tr><td>외부(준공)
평가</td><td>40%</td><td>32%</td><td>6.4%</td><td>1.6%</td></tr>
<tr><td>가감점</td><td colspan="4">가감점현황대로 반영</td></tr>
<tr><td>계</td><td>100점</td><td>32점</td><td>36.4점</td><td>31.6점</td></tr>
</table>

내부(중간)평가 변경

- 평가방법 및 능력평가 결과반영

서울시 지침(기존)	국토부 지침	검토 내용
- 평가대상 : 참여기술자 - 평가주기(회수) : 3회 - 평가점수 반영 : 총용역기간 대비 각 회차별 용역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평가 점수에 반영.	- 평가대상 : 업체 및 참여기술자 - 평가주기(회수) : 년 단위 - 평가점수 반영 : 총점의 50%범위 내에서 평가점수에 반영 가능.	- 감리용역 부실로 인한 대책으로 지침을 적용토록 서울시로부터 **통보되었고,** - 국토부 개정지침 시행일이 2015.7.10.이후 발주분부터 적용되는 바, - 2015년의 평가대상 및 평가주기는 서울시 지침대로 시행하되, 추후 개정여부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행 예정. - 평가점수 반영과 관련하여 용역 기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 할 경우, 점검시기 조정 및 공사 지연시 일관성 부족의 우려가 있는 바, 내부(중간)평가 시 각 단계마다 종합점수를 동일하게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

현 행	검토 내용
- 용역회사 : 단계별 평가점수가 83점 이하인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, 용역수행 상태를 감안하여 필요시 관련기준 및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실시 - 참여기술자 : 평가결과 40점 미만 또는 명백한 부실사례가 있는 경우 감리원교체(벌점부과)등 조치	- 용역회사 : 현재 내부평가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참여기술자만 평가하는 바, 업체에 대한 제재조항은 삭제 필요. - 참여기술자 : 국토부 지침에 따라 참여기술자 교체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조정.

외부(준공)평가 변경

- 평가방법 및 기초평가자료 제출서식 변경

구 분	현 행	검토 내용
용역회사 및 참여기술자 평가표	- 당초 국토부 지침상 발주처에서 평가항목, 내용, 배점의 조정이 가능하여 SH공사 감리용역 특성에 맞도록 항목, 내용, 배점을 변경하여 시행.	- 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발주처에서 평가항목, 내용, 배점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개정된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. (세부항목별 배점만 ±30% 내에서 조정 가능.)
세부항목별 평가배점 기준(단계)	- 5단계(100%, 80%, 60%, 40%, 20%)로 절대평가	- 5단계(100%, 90%, 80%, 70%, 60%)로 절대평가로 국토부 지침 개정
평가점수 반올림	- 소수점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	- 소수점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으로 국토부 지침 개정
용역회사 및 참여기술자 기초평가자료 제출서식	- 국토부 지침에 따른 기초평가 자료를 용역회사로부터 제출받아 평가에 활용하고 있으나, 자료가 충실하지 못해 비계량 평가항목 평가시 평가위원의 주관에 지나치게 좌우되어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짐.	- 용역회사 및 참여기술자의 실적, 업무추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내실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초평가 자료 제출서식의 변경이 필요함.

-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 : 변경 없음

Ⅲ 개정(안)

용역능력평가 변경

- 용역능력평가의 반영비율

구분	현 행				개 정			
	계	감리업체	참여감리원	시공품질	계	용역회사	참여기술자	시공품질
내부(중간)평가	30%	-	30%	-	50%	-	30%	20%
품질평가(시공사)	30%	-	-	30%	-	-	-	-
외부(준공)평가	40%	32%	6.4%	1.6%	50%	40%	8%	2%
가감점	가감점현황대로 반영				가감점현황대로 반영			
계	100점	32점	36.4점	31.6점	100점	40점	38점	22점

※ 국토부 평가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.

(품질평가 점수를 용역능력 평가에 반영할 수 없어 내부평가 항목으로 추가)

※ 내부(중간)평가는 각 단계별 종합점수를 동일하게 반영.

내부(중간)평가 변경

- 평가방법 및 능력평가 결과반영

현 행	개정(안)
- 평가방법 : 서울시 지침에 따른 '공사진행 중 감리 평가 양식'으로 평가 - 평가대상 : 참여기술자 - 평가주기(회수) : 3회 - 점수 반영 : 각 단계 종합점수를 동일하게 반영[합계 30%]	- 평가방법 : 변경없음 - 평가대상 : 변경없음 - 평가주기(회수) : 변경없음 - 점수 반영 : 각 단계 종합점수를 동일하게 반영[합계 50%]

-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

현 행	개정(안)
- 용역회사 : 단계별 평가점수가 83점 이하인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, 용역수행 상태를 감안하여 필요시 관련기준 및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실시 - 참여기술자 : 평가결과 40점 미만 또는 명백한 부실사례가 있는 경우 감리원교체(벌점부과)등 조치	- 용역회사 : 서울시 지침에 의거 미평가하고 있는 바 삭제. - 참여 기술자 :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기술자는 "교체" 조치하고, 필요시(명백한 부실 등) 관련기준 및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실시(벌점 등)

※ 서울시 지침에 의거 참여기술자만 평가하므로 용역회사 제제조항은 삭제하고 참여기술자 교체 기준점수(국토부 지침 준용)를 변경.

외부(준공)평가 변경

-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평가표 변경

구 분	현 행	개정(안)
1.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조직 및 운영체계 35점→30점	1)감리단 조직(10점)	1)건설사업관리단 조직(10점)
	2)감리업무 지원시스템(5점)	2)건설사업관리업무 지원시스템(10점)
	3)감리원 기술교육(5점)	3)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술교육(10점)
	4)감리원 중간평가(15점)	삭제
2. 건설사업관리 현장 업무지원 체계 45점→20점	1)본사내 현장점검 조직구성 및 운영실적(33점)	1)본사내 현장점검 조직구성 및 운영실적(5점)
	2)품질관리계획에 의한 활동 여부(2점)	2)품질관리계획에 의한 활동 여부(5점)
	3)시공감리활동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(10점)	3)건설사업관리활동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(10점)
3. 기술지원체계 20점→50점	항목 없음	1)설계도서 및 시공계획 검토 (20점)
	1)설계변경 검토의 적정성/ 신속성(10점)	2)설계변경 검토 및 운영체계 (20점)
	2)감리단 지원요청에 대한 대응(10점)	3)건설사업관리단의 지원요청에 대한 대응(10점)

※ 국토부 평가지침 준용.(용어 및 배점기준 변경)

※ 세부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.

- 참여기술자 평가표 변경

구 분	현 행	개정(안)
3. 기술적업무 (25점)	1)설계도서 검토(10점)	1)설계도서 검토(10점)
	2)시공계획 검토(7점)	2)시공계획 검토(5점)
	3)발주청에 대한 자문의 충실성(5점)	3)발주청에 대한 자문의 충실성(4점)
	4)유관기관 의견조정(3점)	4)유관기관 의견조정(3점)
	-	5)예산절감 활동(3점)

※ 예산절감 활동 항목이 가감점 항목에서 기술적업무 항목으로 변경

※ 국토부 평가지침 준용.(용어 및 배점기준 변경)

※ 세부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.

※ 외부(준공)평가 점수산정 : 업체 80점 + 참여기술자 20점

- 평가방법 변경

구 분	현 행	개정(안)
세부항목별 평가배점 기준(단계)	- 5단계(100%, 80%, 60%, 40%, 20%)로 절대평가	- 5단계(100%, 90%, 80%, 70%, 60%)로 절대평가로 국토부 지침 개정
평가점수 반올림	- 소수점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	- 소수점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으로 국토부 지침 개정

※ 국토부 평가지침 준용.

가타 변경사항

- 용어 정리

현 행	개정(안)
책임감리용역, 감리전문회사	건설사업관리용역,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
참여감리원, 책임감리원	참여기술자, 책임기술자
보조감리원, 기술지원감리원	분야별기술자, 기술지원기술자

※ 국토부 평가지침 준용.

- 용역회사 및 참여기술자 기초평가자로 제출서식 변경
  : 비계량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 제출 서식을 구체화.[첨부 참조]

Ⅳ 행정 사항

- 본 운영기준은 방침 득한 이후 준공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.
- 방침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용역평가는 본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본다.
- 2015년도 내부(중간)평가 평가표 양식 및 평가주기는 서울시 지침을 준용하고, 추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개정 반영 예정.
- 변경내용을 법무팀에 통보하여 업무편람 내 개정된 기준을 반영 조치.

붙임 1. 전면책임감리 용역평가 운영기준(변경전)
2.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운영기준(변경후)
3.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운영기준 신구대비표(2015.08)
4. 건설사업관리용역 내부평가 평가표 신구대비표(2015.08)
5.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평가 평가표 신구대비표(2015.08)
6. 서울시 책임감리용역 중간평가 시행방안(2013.12.02)
7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505호(2015.07.10). 끝.